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사격용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 입찰공고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명: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사격용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3. 입찰방법: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한경쟁입찰
4. 낙찰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5.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 계약일로부터 30일
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수입물품 - 본회 사업부서와 별도협의 가능)
7.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8. 기초금액: 금37,677,000원(금삼천칠백육십칠만칠천원)(VAT포함) ※ 추정가격: 34,251,818원
※ 必讀 : 납품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을 금액투찰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9.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요망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공고기간: 2022. 7. 27.(수) ~ 8. 4.(목)
2. 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2022. 7. 27.(수), 14:00
3. 입찰서 접수마감 일시: 2022. 8. 4.(목), 14: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2. 8. 4.(목), 15:00 / 경기도체육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본회 사정상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5. 적격심사: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토, 일) 제외)

다. 입찰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입찰참가자격으로 **사격총(분류번호 10자리 : 4918169801)**을 등록한 업체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총포판매업” 허가업체**로 규격서에 명시된 총기류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낙찰 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본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4.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현품설명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규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품의 사양 및 디자인, 규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 참가

마.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보증보험(계약금액의 1천분의 25이상) 제출**
※ 단, 현금(채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납부 불가
-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사전판정 시 배제
-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 입찰보증금 기준 : 투찰금액(기찰 후, 보증금 납부 금액이 기준보다 미달할 경우 적격한 후순위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바.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①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보증보험(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
※ 단, 현금(채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납부 불가

사.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②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①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019호, 2021.04.01.)」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조달청지침 제1019호, 2021.04.01.)」 제4조제①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경영상태 평가관련

- | |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임으로 관련기준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9.),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7. 유의사항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토, 일) 제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전자통신망(나라장터)을 통해 회신
 - 해당 기간내에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적격통과점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자는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8.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토, 일) 제외)에 전자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보증증권(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아.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자. 입찰제출자의 승낙사항

1. 입찰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관련 계약 규정,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동의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입찰 시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3.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24.) 제7조제①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에 의함

카. 청렴이행각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타. 기타사항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2.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로 적격대상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본 공고는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정보조달(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4. 문의사항
 - 계약 관련사항: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이도현 대리(☎031-250-0422)
 - 과업 관련사항: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팀 김희진 대리(☎031-250-04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경기도체육회 재무관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사격용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 특수조건

1. 일반사항

- 가. 본 사항은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사격용 훈련장비 및 용품구매 입찰(계약)에 적용한다.
-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2022년도 학교운동부지원사업 사격용 훈련장비 및 용품구매 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담당자(031-250-0492)와 협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면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모든 사양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만일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담당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왔을 경우에는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용품 및 그 일부를 제작자의 국가, 대한민국 또는 기타 국가 내에서 보호되는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청구도 받음이 없이 발주자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본회에서는 계약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라. 모든 제품은 정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인증서(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제품일 경우 수입인증서 등 수입사에서 발생하는 공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내용물을 원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바.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사. 납품품목 및 수량은 사양서의 품명 및 수량과 동일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제품으로 납품,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아. 모든 물품은 본회 지정장소로 납품하며, 본회에서 포장 해체하여 실질검수를 실시하도록 한다.(포장에 사용된 재료는 전부 수거해 간다.)

- 자. 장비의 설치 과정에서 물품의 훼손, 파손, 고장 등의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유지 및 작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카. 납품 품목은 출고한 원형(각종 내용물, 설명자료 등)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 타.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
- 파.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보증기간에 이상이 발생 시 무상 A/S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 요구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품 장소는 본회 지정장소로 한다.
(수입물품 - 사업부서 별도 협의 가능)

2. 특기사항

가. 검사

-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모든 물품을 본회 지정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입회하에 물품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직접 받아야 한다.
- 2) 검사 결과 필요시 각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최적의 운용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1)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납품 완료시점으로 본다.
- 2) 물품 납품 시 유지에 필요한 기본 부품 등을 포함하여 납품한다.
- 3) 기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4) 수입품목에 대한 납품완료 시기(수입에 따른 납품지연 시)는 별도로 정하며, 사전검수는 납품계약서로 대신하며, 납품완료 시 해당서류(세관통과서 등)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